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9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송언석
이상휘 · 김용태 · 강명구
김승수 · 김태규 · 이양수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 · 컨설팅 · 기술사업화 · 자금 ·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창업”이란 노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창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노인창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노인창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관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2.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제품 제작의 지원
4. 창업자금의 융자 등 재정지원

5.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

6. 투자 유치의 연계 지원

7. 그 밖에 노인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창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내용, 제2항에 따른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2에 따른 노인창업 지원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노인창업”이란 노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창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실태조사) ① ----- ----- ----- ----- ----- -----. <u>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노인창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의2(<u>노인창업 지원</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관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2.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제품 제작의 지원

4. 창업자금의 융자 등 재정지원

5.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

6. 투자 유치의 연계 지원

7. 그 밖에 노인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지원사업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창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내용, 제2항에 따른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u>기준·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29조(벌칙)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1조의2에 따른 노인창업 지원금</u> 3. ~ 6. (현행과 같음)
---	--